

Hong Kong Tax Alert

November 2022 | Issue 22



개정 FSIE제도에 대한 Commissioner's Opinion에 대한 10가지 주요사항



개요

IRD는 웹사이트에 개정된 FSIE제도 상 경제적실질 요건 충족에 대해 세무국에 신청하기 위한 표준 서식과 참고문건을 업로드 해 두었습니다.

본 세무속보에서는 경제적실질요건을 신청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이 참고할만한 10가지 주요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지난번 "Commissioner's Opinion as an interim measure to confirm compliance with the economic substance requirements under the revised FSIE regime"¹, 이후, IRD에서는 Commissioner's Opinion 에 대한 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공표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동 [링크](#)를 참조
- 표준 신청양식(Form IR1297A), 그룹사 신청 첨부물과 주식정보, 서류제출 지시사항을 동 [링크](#)를 참조.

Commissioner's Opinion은 IRD가 납세의무자들이 FSIE제도 상 경제적실질 요건의 준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간 조치입니다. 다국적기업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10가지 핵심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FSIE법인이 공표되면서 IRD의 행정지도 또한 동일한 일자에 IRD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관련해서는 동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관련된 [세무속보](#)도 참고하십시오.

Commissioner's Opinion 신청시 10가지 핵심 사항

- 1. Commissioner's Opinion 의 성격** – Commissioner's Opinion은 강제력을 띠거나 세법상 사전심사 (advance ruling)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무국에서는 (1) Commissioner's Opinion 에서 언급된 조건이나 기준들이 충실히 지켜지고 (2) 경제적실질 요건이 FSIE 제도에 제안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세무국에서는 그 의견에 따라 경제적실질 요건을 적용할 것입니다.
- 2. Commissioner's Opinion 신청의 이점** –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Commissioner's Opinion 에 따라 경제적실질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청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음.
- 3. 신청시기** – 신청시기는 FSIE제도의 공표 (2022년 10월 28일) 와 해당 법안 실행 전 (2023년 1월 1일)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함
- 4. 신청범위** – 신청은 2022/23 혹은 2023/24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 적용 가능함.

¹ The tax alert can be accessed via this link: "[Commissioner's Opinion as an interim measure... - KPMG China \(home.kpmg\)](#)"

5. **신청 기준** – 신청서는 별도법인 기준 혹은 그룹 기준 모두 제출 가능
6.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정보** –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 어떤 종류의 역외소득이 있는지, (2) 해당 역외소득의 금액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3) 홍콩에서 수행되는 특정 경제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4) 홍콩에서 근무하는 총 직원 수의 범위와 그들의 직책, (5) 특정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홍콩에서 발생하는 연간 운영비용의 범위 추계액, (6) 외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 해당 정보들은 신청서식의 관련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게 될 것임.
7. 특정 활동에 대한 외주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외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세부사항과 외주서비스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해당 서비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그룹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조건이 맞아야 함:
 - 신청자와 다국적기업 내 여타 그룹사들은 단일의 서비스 계약에 의한 외주서비스를 통해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자와 그 대표자는 그룹사 일괄 제출을 위해 여타 그룹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서비스 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서면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또한, Annex (엑셀 양식)를 작성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 그룹사 일괄제출에 포함되는 다국적기업 회사들의 세부정보, (2) 관련된 역외소득의 성격과 금액 추계액, (3) 관련된 경제적 활동.
9. 세무국에서는 다음의 경우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임: 만약 (1) 관련 역외소득에 조세 쟁의가 있거나 (2) 신청자 혹은 관련 다국적기업의 그룹사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10. 신청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나, 서명된 신청서 (Annex완성본 하드카피와 서비스 계약서)도 IRD에 제출하여야 함.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함.

KPMG의 논평

IRD는 Commissioner's Opinion 신청에 따른 자료요청을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신청서식 중 일부에 박스 체크 형식이나 직원, 운영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 대신 추계액을 포함하도록 한 것 등). 그러나, 여전히 신청서 제출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해 보입니다.

게다가, 여타 그룹사의 경제적실질과 특정활동에 대한 외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서비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그룹사간 별도의 서비스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국적기업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 이사회 의사록만 있는 경우 등).

홍콩의 다국적기업이 세무국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업무 진행이 필요하며 (신청서 접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신청서 제출을 위한 자료 확보와 형식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pmg.com/cn/socialmedia



For more KPMG Hong Kong Tax Alert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services/tax/hong-kong-tax-services/hong-kong-tax-insights.html>



For a list of KPMG China office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about/offices.htm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Huazhen LLP, a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nership, KPMG Advisory (China) Limite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Mainland China, KPMG, a Macau (SAR) partnership, and KPMG, a Hong Kong (SAR) partnership, are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2022 KPMG Tax Services Limited, a Hong Kong (SAR)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